

**SESSION Ⅲ**

**시설안전 정책**

▣ 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정책 / 오진수

▣ 시설물 안전진단 내실화 방안 / 이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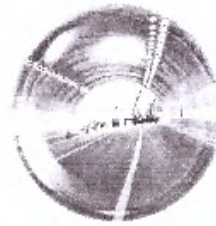
## 4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책

■ 오진수 사무관

“시설 안전정책, 이렇게 바뀝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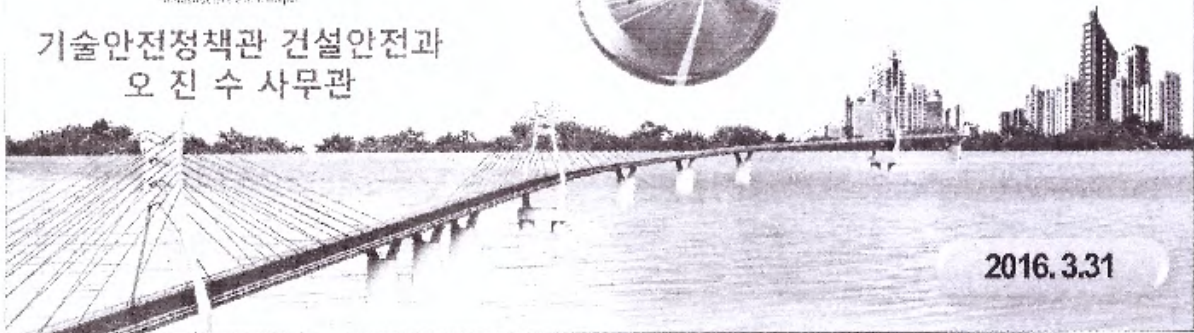
# 시설물 안전정책 설명자료

## [시특법령 개정사항 등]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오진수 사무관



2016. 3. 31

### 순서



- ❶ 시특법 개정사항 소개
- ❷ 시특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소개
- ❸ 시특법 이행사항 당부

## 제 1 장

국토교통부

### 시특법 개정사항 소개(2014년 이후)

## 목 차

국토교통부

1.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제15조)
2. 설계도서 등의 제출시기 변경(제17조)
3. 내진성능평가 의무화(제7조)
4.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근거 마련(제33조)
5.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규정
6. 시특법 전부개정

# 1. 시특법 개정사항 소개

## 1.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법 제15조)

### ● 주요내용 (2014. 1. 17 시행)

-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이행 및 시정명령(제15조 제2항)
- 관리주체는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등급(D, E등급)의 경우 이를 주민에게 공지하도록 함(제15조 제3항)
- 상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제44조제2항)

### ● 벌칙 등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권자
1. 이행 및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1,000만원	· 시·도지사 : 교량 및 터널(시도, 군도, 도시철도), 상하수도(광역 및 중앙용수 제외)
2.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과태료 1,000만원	· 시장·군수·구청장 : 민간 관리 시설물

5

# 1. 시특법 개정사항 소개

## 2. 설계도서 등의 제출시기 변경(법 제17조)

### ● 제출절차 및 시기 (2014. 1. 17 시행)

구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관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종류	1. 준공 도면 2. 준공 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할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최종관리보고서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서 정한 시설물 관리대장
제출자	시공자	발주자	관리주체
제출처 (기관)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출시기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준공(사용승인일)후 3개월 이내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보존기간	시설물의 존속기간		
열람범위 및 절차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지침에 따른다.		

-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가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6

# 1. 시특법 개정사항 소개

## ■ 3. 내진성능평가 의무화(법 제7조)

### ● 주요내용(2014. 7. 15 시행)

-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층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포함(제7조의2 제1항)
-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제44조제3항)

### ● 벌칙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일자
1. 제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3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지사: 모든 시설물 (공공 및 민간관리 시설물)</li> <li>· 시장·군수·구청장: 민간 관리 시설물</li> </ul>

7

# 1. 시특법 개정사항 소개

## ■ 4.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근거 마련(법 제33조의4)

### ● 주요내용(2014. 7. 15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
-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시행령 제27조)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도복교량  
보도육교  
인공 비탈면(옹벽, 사면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대상시설 제외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등, 시행규칙 제20조의2)

- 무상안전점검 요청 및 시행  
- 점검결과외 통보  
- 실적 제출 등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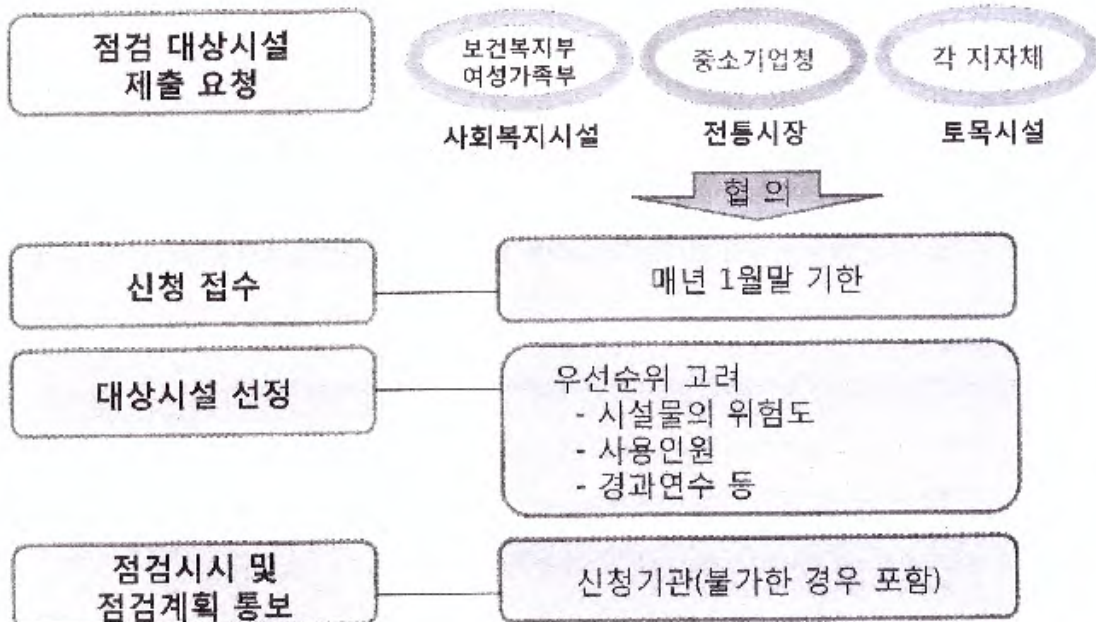
# 1. 시특법 개정사항 소개

## I(참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1.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 복지부 및 여가부 소관이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
  2. 전통시장 : 아케이드, 주차장 등 시설
  3. 교량
    - 연장 20m 미만의 면도(面道), 이도(里道), 농도(農道) 교량
    -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의 면도, 이도, 농도의 10년 미만 교량
  4. 육교 및 지하도
    - 준공연도 10년 미만 보도육교
    - 연장 100m 미만의 준공연도 10년 미만인 지하보.차도(상가설치 지하도 제외)
  5. 옹벽 및 절토사면
    - 높이 5m 미만 또는 연장 20m 미만 또는 경사 34도 미만의 옹벽 및 사면
- ※ 단독주택 및 개인 영리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부속되거나 민원분쟁소지 시설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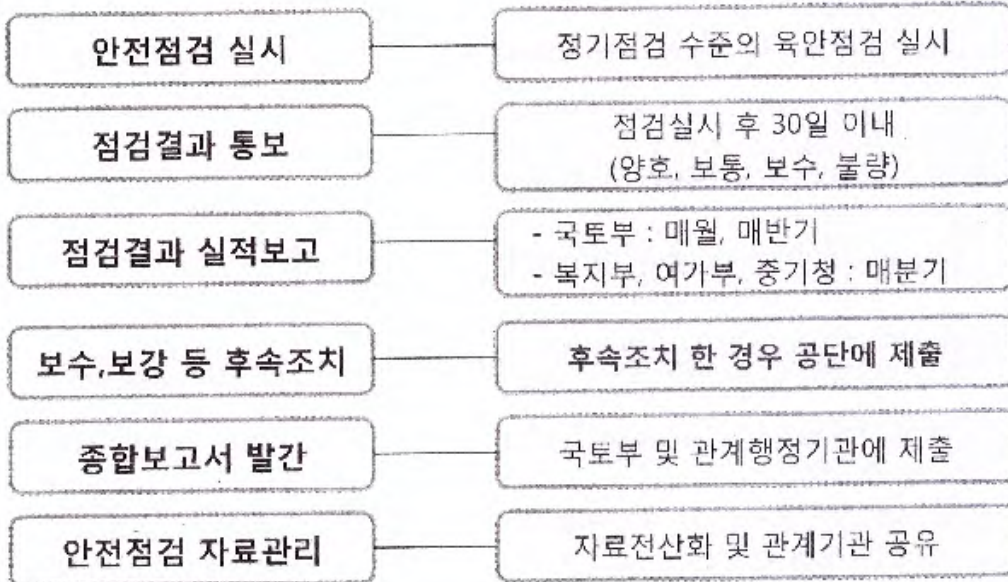
# 1. 시특법 개정사항 소개

## I(참고)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흐름도 - 점검대상 선정 및 통보



# 1. 시특법 개정사항 소개

## I(참고)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흐름도 - 점검실시 및 결과



# 1. 시특법 개정사항 소개

## ■ 5.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규정 (법 제7조제2항)

### ● 주요내용 (2016. 2. 12 시행)

-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점검의 실적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하도록 함(제7조제2항)
- 상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신설(제39조제1항, 제44조제1항)

### ● 벌칙 등

위반내용	벌칙 및 과태료	과태료 부과일자
1.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 시·도지사 : 교량 및 터널(시도, 군도, 도시철도), 상하수도(광역 및 광역용수 제외)
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1억원 이하의 과태료	· 시장·군수·구청장 : 민간관리 시설물



# 1. 시특법 개정사항 소개

## ■ 6. 시특법 전부개정

### ● 개정 주요내용

1.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시특법으로 일원화 하여 안전관리 강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안전처)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부)상의 3중시설물로 편입·신설하여 일원화하고, 관리주체에게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 마련

2. 시설물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도록 성능평가 도입

· 압축성장기(7~80년대)에 건설된 사회기반시설물(SOC)가 급속하게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확보와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체계 구축

· 준공 후 30년 이상 SOC는 10.5%수준이며, 10년 후 23.96%로 급증할 전망(시특법상 '15년말 기준)

☞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 등 8종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

13

## 제 2 장

### 시특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소개(2014년 이후)

# 목 차

1. 1,2종 시설물의 확대(시행령 별표1)
2.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주기 강화(시행령 별표 1의2)
3.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조정  
(시행령 별표 3)
4. 책임기술자의 자격 강화(시행령 별표2)

## 2. 시특별 하위법령 개정사항 소개

### ■ 1. 1,2종 시설물의 확대(시행령 별표1)

● 주요 내용(2016. 1. 1 시행)

구분	1종, 2종 시설물(추가, 확대)
공통구	• 공통구(2종시설물)
신규	• 연장 1,000m 이상의 방파제(1종시설물) • 연장 500m 이상의 방파제, 방파호안 등(2종시설물)
추가	• 배수·빗물 펌프장 • 1종 수문, 댐문에 포함된 배수(빗물)펌프장(1종시설물) • 2종 수문, 댐문에 포함된 배수(빗물)펌프장(2종시설물)
도로터널	• 연장 500m 이상의 지방도 (2종시설물) ⇒ 연장 300m 이상의 지방도, 시·군·구도 터널
범위	• 연면적 5천㎡ 이상의 전시장 (2종시설물) ⇒ 연면적 5천㎡ 이상의 전시장, 일반철도역사, 공항정사, 양안여객터미널,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확대	• 절토사면 • 연장 200m 이상, 높이 50m 이상의 절토사면 (2종시설물) ⇒ 연장 100m 이상, 높이 30m 이상의 절토사면

⇒ 관리주체는 개정으로 새롭게 포함되는 시설물의 설계도서를 FMS에 등록하는 등 시특별 대상 시설물로 관리할 필요.

또한, 지자체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할지역 내 민간시설물의 등록을 독려

## 2. 시특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소개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2.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주기 강화(시행령 별표 1의2)

● 주요 내용(2015. 1. 6 시행)

- 취약시설물(D,E)의 경우 정기안전점검에 폭설/폭우 등 계절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강화

기 본	개 정 안
정기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 : A, B, C등급의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고, D, E등급의 경우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1년에 3회 이상 실시

### 3.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조정(시행령 별표3)

● 주요 내용(2015. 1. 6 시행)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중급기술자) 특정분야에 대해 '기사' 자격으로 제한을 두던 항목을 삭제(건설법 시행령에서도 건설기술자 등급을 특정자격(기사)을 제한하지 않음)

기 본	개 정 안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안전 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토목·건축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6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함)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안전 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토목·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가 6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함)

17

## 2. 시특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소개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4. 책임기술자의 자격 강화(시행령 별표 2)

● 주요 내용(2019. 1. 1 시행)

-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의 숙련기간을 갖도록 자격요건에 경력요건(해당 분야 교육 이수 후 그 분야의 2년 이상 업무수행)을 추가(2016. 1. 1 개정)

기 본	개 정 안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양반,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 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 한다)이 2년 이상일 것

18

## <참고> 취약시설물(D,E급) 현황

국토교통부  
Korea Land and Transportation

### ■ 취약시설물(D,E급) 현황

(2016. 12. 31 단위 : 개소)

구분	계	교량	건축물	댐	하천	항만	복개 구조물	옹벽	철도 사면
계	47	10	7	7	14	2	1	3	3
D급	47	지자체 10	민간 4	농림부 6	농림부 2	해수부 1	시사처 1	민간 1	국토부 3
			지자체 1	지자체 1	지자체 5	국방부 1		교육부 2	
			국가보훈처 2		국토부 7				
E급	-	-	-	-	-	-	-	-	

※ 소관주체 : 국토부 10개, 교육부 2개, 국방부 1개, 농림부 8개, 해수부 1개, 국가보훈처 2개, 지자체 18개, 민간관리주체 5개

19

## <참고> 취약시설물(D,E급) 현황

국토교통부  
Korea Land and Transportation

### ■ 취약시설물(D,E급) 목록

구분	시설물	등급	관리주체	구분	시설물	등급	관리주체
교량	반곡교	D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건축물	오산 종합시장	D	오산 종합시장
	서상1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다대5지구물문대 아파트 101동		다대물문대 아파트
	주천교		영월군청		안산 유통상가1차		안산유통상가 사업협동조합
	삼귀교		영천시청		하라프라자		하라프라자 관리사무소
	삼배교		영천시청		부산보훈병원 별관동		부산보훈병원
	빅석진교		고령군청		부산보훈병원 본관동		부산보훈병원
	서울역 고가도로		서울특별시청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신전교		울산광역시 북구청				
	용천교		보령시청				
	연춘교		동남구청				

20

## <참고> 취약시설물(D,E급) 현황

국토교통부

### ■ 취약시설물(D,E급) 목록

구분	시설물	등급	관리주체	구분	시설물	등급	관리주체
수문	대임3호 배수문	D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수문	망월1 배수통문	D	광주국토 관리사무소
	본리 배수문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망월3 배수통문		광주국토 관리사무소
	도흥 배수문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망월4 배수통문		광주국토 관리사무소
	송천1호 배수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망월5 배수통문		광주국토 관리사무소		
	다남 2수문	김천시청	유천 배수문		익산시청		
	방산 1수문	김천시청	항만 광양항 낙포부두(1)		여수광양 항만공사		
	오야 1수문	경주시청	진해1부두		국군수송사령부		
호명 2배수문	경주시청	하구둑 지석방조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21

## <참고> 취약시설물(D,E급) 현황

국토교통부

### ■ 취약시설물(D,E급) 목록

구분	시설물	등급	관리주체	구분	시설물	등급	관리주체
댐	여당저수지	D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복개 구조물	도동천 복개시설		울릉군청
	오봉저수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절도 사면	신북지구	이정부국토 관리사무소
	남대저수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포항 동해 석 II지구	포항국토 관리사무소
	지슬저수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포항 언일 우복 I 지구	포항국토 관리사무소	
	육녀저수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옹벽		코스모신소재 철도 옹벽	D	코스모신소재(주)
	일로2호저수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대구성명초등 학교(복측 옹벽)	대구광역시 교육청	
	왕암저수지	논산시청			윤림중학교 옹벽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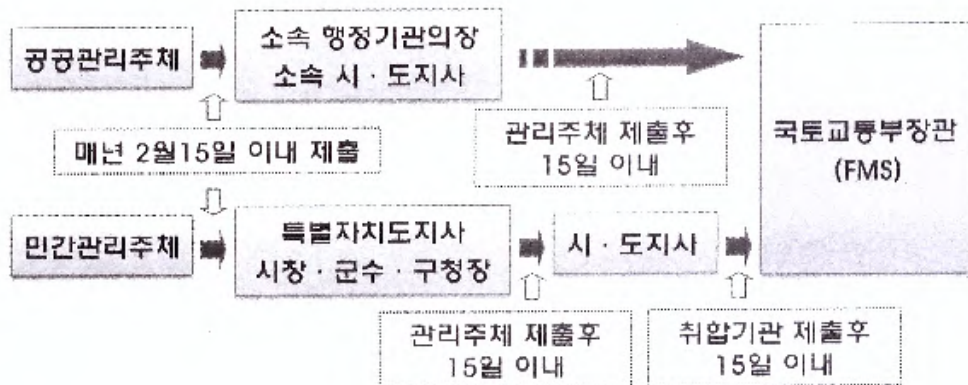
22

## 시특법 이행 사항(관리주체 의무) 당부

## 시특법 이행 사항(관리주체 의무) 당부

### ■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법 제4조)

#### ● 제출 절차(규칙 제3조)



# 시특법 이행 사항(관리주체 의무) 당부

국토교통부

## ■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법 제4조)

### ● 포함사항

- 조직·인원 및 장비
-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체계
- 설계도서 수집 및 보존
- 점검·진단 계획 및 보수·보강 계획
- 안전과 유지 관리 비용

### ● 벌칙 등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권자
1.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미 수립		
- 수립지연 1개월 미만 :	과태료 1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지사 : 교량 및 터널(시도, 군도, 도시철도), 상하수도(광역 및 공업용수 제외)</li> <li>· 시장·군수·구청장 : 민간관리 시설물</li> </ul>
- 수립지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	과태료 200만원	
- 수립지연 2개월 이상 :	과태료 300만원	

25

# 시특법 이행 사항(관리주체 의무) 당부

국토교통부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법 제6조·제7조)

### ● 실시 시기 및 실시자 등

구분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건축물의외	
A등급	반기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반기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년 3회 이상(예방기·유기·동일기)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실시자	관리주체, 진단기관, 유지관리업자	관리주체, 진단기관, 유지관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교육이수자	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		책임 및 참여 기술자

### ● 실시시기 조정

- 중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해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 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 → 국토부 협의후 생략 또는 시기조정

### ● 중복실시

-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는 정기점검 면제
- 정밀안전진단 실시완료일로부터 6개월전에 실시주기의 마지막날이 속한 정밀점검 생략

26

# 시특법 이행 사항(관리주체 의무) 당부

국토교통부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법 제6조·제7조)

### ● 법칙 등

위반내용	벌칙 및 과태료	부과권자
1. 점검·진단 미실시 또는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 발생	10년이하 징역	-
2. 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자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
3. 업무상 과실로 1호의 죄를 범한자	5년이하 징역,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4. 업무상 과실로 2호의 죄를 범한자	10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5. 진단 미실시 또는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 자연기간 6개월 미만 - 자연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자연기간 12개월 이상	과태료 2천만원 과태료 4천만원 과태료 4천만원 초과~7천만원	시·도지사 : 교량 및 터널(시도, 군도, 도시철도), 상하수도(광역 및 공업용수 제외) 시장·군수·구청장 : 민간관리 시설물
6. 점검 미실시 또는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 자연기간 1개월 미만 - 자연기간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 자연기간 2개월 이상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200만원 과태료 300만원	시·도지사 : 교량 및 터널(시도, 군도, 도시철도), 상하수도(광역 및 공업용수 제외) 시장·군수·구청장 : 민간관리 시설물

27

# 시특법 이행 사항(관리주체 의무) 당부

국토교통부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통보(법 제11조)

### ● 통보 절차

- 일반적인 경우 : 점검·진단 실시자가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통보
-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
  1. 점검·진단 실시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2. 관리주체 : 실시자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 과태료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권자
1. 점검·진단 실시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100만원 이하	시·도지사 : 교량 및 터널(시도, 군도, 도시철도), 상하수도(광역 및 공업용수 제외) 시장·군수·구청장 : 민간관리 시설물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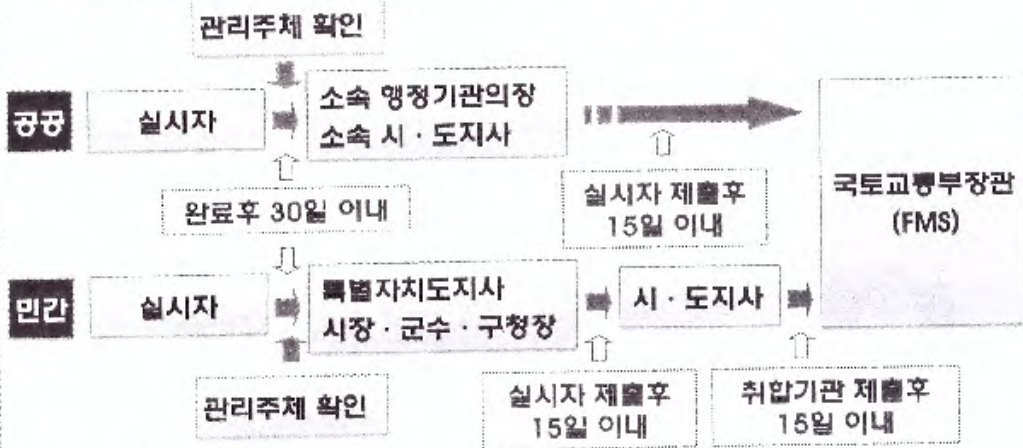


# 시특법 이행 사항(관리주체 의무) 당부

국토교통부

## ■ 점검·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관리(법 제 11조의 2)

### ● 실시절차(점검·진단, 보수·보강)



### ● 과태료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권자
1. 점검·진단,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실적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자	과태료 300만원	국토교통부장관

29

# 시특법 이행 사항(관리주체 의무) 당부

국토교통부

## ■ 사용제한 등(법 제 14조)

### ● 사용 제한 절차 및 주체

- ①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가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 조치
- ②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③ 통보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 공고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 관리 시설물에 대해 관리주체에게 통보 후 사용제한 등 조치 명할 수 있음

### ● 벌칙 등

위반내용	벌칙 및 과태료	부과권자
1. ④항 명령을 받고 미 이행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년이하의 징역	-
2. ④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3. 업무상 과실로 ④항에 대해 공중의 위험 발생하게 한 자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4. 업무상 과실로 ④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5. ④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민간)	과태료 300만원	시·군·구청장

30

# 시특법 이행 사항(관리주체 의무) 당부

국토교통부

## ■ 점검·진단 실시결과의 이행(법 제 15조)

### ● 결과 이행 절차 및 실시자

- ①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사항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2년 이내 보수·보강 착수, 착수 후 3년 이내 완료
- ② 국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행 및 시정을 명령
- ③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주체가 방송, 인터넷, 표지판 등 실효성이 담보된 수단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지



[표지판 공지]



[인터넷 공지]

31

# 시특법 이행 사항(관리주체 의무) 당부

국토교통부

## ■ 점검·진단 실시결과의 이행(법 제 15조)

### ● 벌칙 등

위반내용	벌칙 및 과태료	부과권자
1.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년이하 징역	-
2.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3. 업무상 과실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 발생하게 한 자	5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4. 업무상 과실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10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5.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차 위반 : 500만원 과태료 2차 위반 : 700만원 과태료 3차 위반 : 1천만원 과태료	· 국토부장관 : 모든 관리주체 · 시·도지사 : 교량 및 터널(시도, 군도, 도시철도), 상하수도(광역 및 광역용수 제외) · 시장·군수·구청장 : 민간관리 시설물
6.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차 위반 : 300만원 과태료 2차 위반 : 500만원 과태료 3차 위반 : 1천만원 과태료	
7.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과태료	

32

# 시특법 이행 사항(관리주체 의무) 당부

국토교통부

## ■ 조치결과외 통보(법 제 15조의2)

### ● 실시절차 및 주체

- 민간관리주체는 보수·보강 등 조치 완료 후 결과를 30일 이내에 FMS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 과태료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관자
1. 보수·보강 결과 미 통보	과태료 100만원	시장·군수·구청장

## ■ D·E등급 안전관리 방안

관리주체 년 2회 점검 ⇒ 년 3회 점검

주민공지(방송, 인터넷, 표지판) 모니터링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 이행 확인

33

# 시특법 이행 사항(관리주체 의무) 당부

국토교통부

## ■ 설계도서 등의 보존(법 제17조)

### ● 제출절차 및 시기

구분	설계도서 등 원형서류	관리보고서	시설원관리대장
종류	1. 준공 도면 2. 준공 내역서 및 지방서 3. 구조계산서 4.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할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최종관리보고서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서 정한 시설원 관리대장
제출자	시공자	발주자	관리주체
제출처 (기관)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출시기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준공(사용승인일)후 3개월 이내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보존기간	시설물의 존속기간		
별량범위 및 절차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지침에 따른다.		

34

# 시특법 이행 사항(관리주체 의무) 당부

국토교통부

## ■ 설계도서 등의 보존(법 제17조)

### ● 벌칙

위반내용	벌칙 및 과태료	부과권자
1.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미 보존한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2. 감리보고서 미 제출	과태료 300만원	국토교통부장관
3.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시설물관리대장 미 제출	과태료 300만원	국토교통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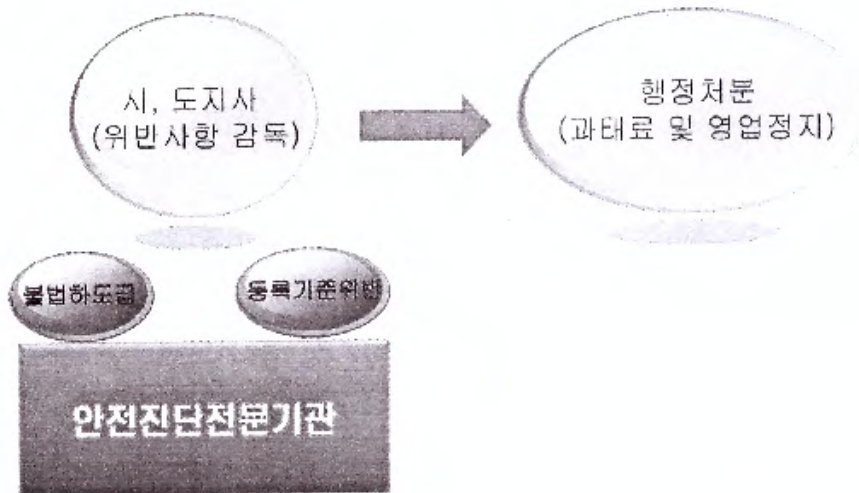
\* 2014.1.17 이전 준공 시설물에 한함

35

# 시특법 이행 사항(관리주체 의무) 당부

국토교통부

##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관리 철저 요청



36

# 시특법 이행 사항 (관리주체 의무) 당부

국토교통부

## ■ 안전진단전문기관 과태료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권자
1.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3항)	100만원	
2. 휴업·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5항)	100만원	
3.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의6제1항)	100만원	· 시·도지사
4.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조의6제3항)	300만원	
5. 실태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의2제1항)	300만원	

37

# 시특법 이행 사항 (관리주체 의무) 당부

국토교통부

## ■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권자
1.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제8조의2)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2.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도급한 경우 (제8조의3)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정지 6개월	
3.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제9조제1항)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	· 시·도지사
4. 최근 2년간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의7)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5.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켜 공중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제10조)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정지 6개월	

38





## **5** 시설물 안전진단 내실화 방안

■ 이덕조 사무관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내실화 강화 대책



### 목 차

1.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제출 기관 교육실태
3. 시설물 점검 진단 미제출 관리주체 조치계획



## 1. [국회]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국토교통부

- 1. D, E급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미흡
  - 시특법 개정을 통해 관계 행정기관은 D/E급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 관리주체는 D/E급 시설물에 대해 주민에게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 전무
- 2. 정밀안전진단 관리감독 강화 (14년 대체)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안일한 관리 감독(지적사항)
    - ▶ 국토부는 실태점검과 순회교육 등 계도기간을 거쳐(15년), 점검 및 진단 결과 미제출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16년)

3

## 2. 점검 및 진단 미제출 관리주체 실태점검

국토교통부

- 시설물 관리주체 실태점검 및 FMS 사용 교육
  - 점검기간 : 2014년 1회, 15년 2회(반기 각 1회)
    - ✓ 14년 하반기 : 11. 12 ~ 12. 19 (38일)
    - ✓ 15년 상반기 : 5. 18 ~ 6. 12 (26일)
    - ✓ 15년 하반기 : 11. 25 ~ 12.15(21일)
  - 점검대상 : 점검·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물 관리주체
  - 점검방법 : 미제출 관리주체 담당자를 지역별로 교육
  - 점검내용 : ① 실태점검을 통해 미제출 사유 파악  
② 시특법 및 FMS 사용법 등 특별교육

4

## 2-1. 점검 및 진단 미제출 실태점검 결과

국토교통부

### ■ 14년 하반기 실태점검 결과

- 시설물 85,866개소중 점검, 진단 미제출 시설물 3,816개소 (4.4%)

구분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계
진단·점검 미제출	2,583개소	1,183개소	50개소	3,816개소 (682 관리주체)

- ❖ 공공기관 시설물 : 2,402개소, 민간관리 시설물 : 1,404 개소

- 실태점검 이후 미제출 시설물 1,050개소 (27.5%) 제출 (14.12월)

구분	미제출 시설물 ('14.9월)	추가제출	미제출 시설물 ('14.12월)	비고
진단·점검 미제출	3,816개소	1,050개소	2,766개소 (3.2%)	진단 : 46개소 정밀점검 : 889 정기점검 : 1,832

- ❖ 미제출 관리기관 총 682기관 중 420개 기관 교육참석(61.6%)

5

## 2-2. 점검 및 진단 미제출 실태점검 결과

국토교통부

### ■ 15년 하반기 실태점검 결과

- 시설물 80,851개소중 점검, 진단 미제출 시설물 5,148개소 (6.3%)

구분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계
진단·점검 미제출	3,728개소	1,331개소	88개소	5,148개소 (950 관리주체)

- ❖ 공공기관 시설물 : 2,752개소, 민간관리 시설물 : 2,396개소

- 실태점검 이후 미제출 시설물 2,823 개소 점검 진단 추가제출 (15.12월)

구분	미제출 시설물 ('15.11월)	추가제출	미제출 시설물 ('15.12월)	비고
진단·점검 미제출	5,148개소	2,823개소	2,325개소 (2.9%)	진단 : 56 정밀점검 : 585 정기점검 : 1,684

- ❖ 미제출 관리기관 총 950기관 중 471개 기관 교육참석(49.6%)

5

## 2-3. 관리기관 실태점검 결과 미제출 사유

국토교통부  
www.mot.go.kr

### ■ 미제출 사유 분석 (15년 하반기 실태점검 결과)

구분	비율
1. FMS 사용법 미숙	46%
2. 담당자 변경, 퇴사	23%
3. 점검 및 진단 점검 기간 착오	13%
4. 기타 : 관리주체변경, 보수보강, 의무사항 인지부족 등 - 예산부족 4.5%, 취합기관 승인 지연 3.4%	19%

❖ 5,148개 미제출 시설물 중 2,818개소(54.8%) 사유서 제출

7

## 2-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

국토교통부  
www.mot.go.kr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책법 제6조·제7조)

#### ● 실시 시기 및 실시자 등

구분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건축물외	
A등급	반기 1회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반기 1회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반기 1회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실시자	관리주체, 진단기관, 유지관리업자	관리주체, 진단기관, 유지관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교육이수자	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		책임 및 참여 기술자

#### ● 실시시기 조정

- 중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해 공사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 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 → 국토부 협의후 생략 또는 시기조정

#### ● 중복실시

- 상위 점검·진단 실시와 하위 점검이 중복되는 경우 하위 점검 면제
- 하위 점검 면제 시 실시기간 중 마지막 1회에 한함 (국토부 유권해석)

8

## 2-5. 안전점검 및 진단관련 벌칙사항

국토교통부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미제출 벌칙

#### ● 벌칙 (시책법 제39조)

위반내용	벌칙 및 과태료	부과권자
1. 점검·진단 미실시 또는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 발생	10년이하 징역	-
2. 진단 미실시 또는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 지연기간 6개월 미만 - 지연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지연기간 12개월 이상	과태료 2천만원 과태료 4천만원 과태료 4천만원 초과~7천만원	시·도지사: 교량 및 터널(시도, 군도, 도시철도), 상하수도(광역 및 중앙용수 제외) 시장·군수·구청장: 민간관리 시설물
3. 점검 미실시 또는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 지연기간 1개월 미만 - 지연기간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 지연기간 2개월 이상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200만원 과태료 300만원	시장·군수·구청장: 민간관리 시설물

#### ● 과태료 (시책법 제44조)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권자
1. 점검·진단,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실적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자	과태료 300만원	국토교통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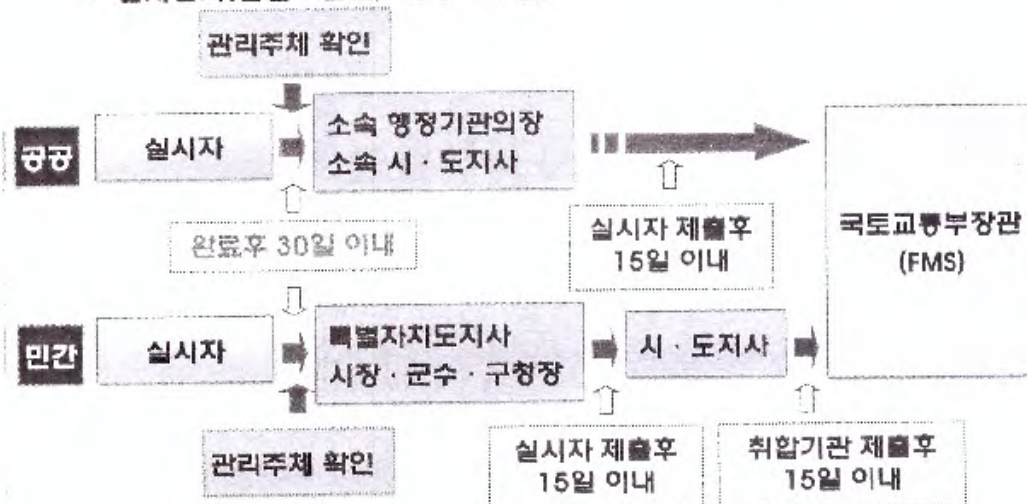
9

## 2-6. 점검 및 진단 결과 제출 흐름도

국토교통부

### ■ 점검·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관리(법 제 11조의 2)

#### ● 실시절차(점검·진단, 보수·보강)



10

## 3-2. 점검 진단 미제출 관리주체 조치계획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 ■ 과태료 부과대상 (제44조 제3항)

- ✓ 2.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 한 자
- ✓ 8. 제11조의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 한 자

\* 16.2월말기준 미제출 현황 : 5,080개소(진단60, 정밀 838, 정기 4,172)

[ 공공기관 1,734개소, 민간기관 : 3,336 ]

### ■ 16년 하반기 과태료 부과 실시

-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출하지 아니 한 자
- ✓ 16년 상반기(5~6월) 실태점검을 통하여 제출을 독려하고
- ✓ 16년 하반기 부터 부과 실시(300만원)

13

